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2. 11 선고 2021가합1273(본소), 2021가합15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회복, 강현우, 이지윤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계약의 체결 및 고액분리시설의 설치 경과

○ 원고는 2019. 1. 2. 피고와 원고의 가축분뇨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 제작 설치공사’, ‘고액분리시설 제작 설치공사’, ‘교반발효기 제작 설치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이하 각각의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설치계약’이라 한다), 하자보증기간을 공사 완료 후부터 2년으로 정하면서 피고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의 30%를 준공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원고에게 납부하되, 하자보수금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 악취방지시설 제작 설치공사의 공사금액은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교반발효기 제작 설치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 7,000만 원이다. 고액분리시설 제작 설치공사의 공사내역은 ‘데칸타1), 드럼스크린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금액은 1억 7,000만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이다.

○ 한편 원고와 피고가 위 각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D, 피고 이사 E 및 C 과장 F가 고액분리시설 제작 설치공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는 C가 제시한 고액분리시설의 견적서를 검토한 후 피고와

사이에 위 '고액분리시설 제작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 12. 6. C와 납품내역을 스크류 데칸타, 드럼 스크린, 각종 부대시설, 납품 기간을 2018. 12. 6.부터 2019. 2. 20.까지, 납품장소를 정읍시 G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 계약금액을 1억 7,600만 원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시운전 범위를 '무부하/부하 테스트, 함수율/처리량 검증, 운전교육, 인수인계 외 원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범위'로 정하였다.

○ 피고와 C는 2019. 7. 30.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중 납품기간을 2019. 1. 7.부터 2019. 8. 14.까지로 변경하였고 C는 2019년 8월 말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고액분리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C가 공사를 완료한 직후 원고, 피고, C 직원들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였고, 시운전 당시 발견된 문제는 수정을 거쳐 정상 작동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악취방지시설, 교반발효기의 설치 및 공사대금 일부 지급

○ 한편 피고는 악취방지시설의 경우 주식회사 I에 그 제작 및 설치를, 교반발효기의 경우 주식회사 J에 그 제작 및 설치를 위탁하였고, 위탁업체들은 2019년 8월 말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작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전체 설치계약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악취방지시설, 고액분리시설, 교반발효기의 전체 공사금액은 합계 6억 1,000만 원으로 원고는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0. 22.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5,643,000원 상당의 응집제(화공약품)를 납품하였다.

다. 고액분리시설의 문제 발생 및 C의 하자보수 조치

○ 원고는 2019년 9월 말부터 고액분리기에 분뇨를 주입하는 주입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상 전기 과부하가 발생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작동이 중지되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그 해결을 피고 이사 E에게 요청하였다. E은 C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C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입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하였다.

○ 고액분리기 주입기 부분의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C는 7~8차례 주입기를 교체하였고 두 번 정도 고액분리기 자체를 뜯어가 고액분리기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고액분리기의 주입기를 7~8회 교체하여도 분뇨처리시설의 작동 중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고액분리시설 자체의 하자와 주입기의 하자가 인정된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고액분리시설 전체의 교체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교체비용, 즉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인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잦은 작동 중지로 인해 원고는 분뇨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축산업자와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K영농조합법인에 분뇨처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K영농조합법인에 분뇨처리위탁 비용으로 2019. 12. 23.경 12,420,000원, 2020. 1. 21. 12,980,000원, 2020. 9. 17.경 10,000,000원, 2019. 11. 23. 5,700,000원 합계 41,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가 설치한 고액분리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 1,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의 30%인 1억 8,300만 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갈음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 의무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과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고액분리시설의 설치 및 제작은 C에서 전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고액분리기의 문제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670조가 규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1년) 또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상인간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기간(6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C가 고액분리시설을 직접 가동해본 결과 고액분리기 성능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액분리기에 투입되는 분뇨가 동일한 농도로 주입되지 않고 입자가 굵은 분뇨가 과도하게 주입되어 주입기 파이프를 막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액분리시설이나 고액분리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설치계약의 공사금액 중 미지급액 3,000만 원 및 응집액(화공약품) 납품대금 5,643,000원 합계 35,643,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척기간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즉 제척기간 초과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참조). 한편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액분리시설 등의 하자보증기간을 공사 완료 후부터 2년으로 정한 사실, C 등 피고의 위탁업체들이 2019년 8월 말경까지 분뇨처리시설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9년 9월 말경부터 피고 이사 E에게 분뇨처리시설의 작동 중지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C가 고액분리기 주입기의 교체 등 하자보수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 전인

2019년 9월 말경 고액분리시설을 포함한 전체 분뇨처리시설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청구를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고, C가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고액분리시설 하자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고액분리기 전체의 원수 처리량이 계약 시 예상한 시간당 20~30㎥에 미치지 못하는 10.8㎥로 확인되어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고, 전기 전자 부품 등의 고장은 원심탈수기의 비정상 운전에만 따른 과전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온 원심탈수기 급이기(주입기) 파손과 안전상 및 차단 장치 작동 불능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 및 발생 시점은 피고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직후라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룰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고액분리시설의 문제 발생 및 C의 하자보수 조치 경과, 갑 제5호증의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액분리시설을 포함한 전체 분뇨처리시설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감정인의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견적서(갑 제5호증)와 실제 시공 현황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감정인이 고액분리기를 시운전하였을 때도 기계 장치의 소음, 진동, 멈춤 등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② 감정인은 감정 목적물의 전기 전자 부품 등의 고장은 원심탈수기의 비정상 운전에만 따른 과전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원심탈수기 급이기 파손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감정인도 원심분리기 급이기 배관 파손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요망된다고 판단하였다(감정서 70면). 또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인은 ‘원심분리기 급이기 배관 파손의 경우 피고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설계상, 제작상 하자가 아님을 피고가 재판부에 증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사실조회회신서 9면).

③ 감정인은 20여 분간의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고액분리기 전체의 원수 처리량이 견적서 상 시간당 20㎥에 크게 못 미치는 시간당 10.8㎥이므로 이는 설계상,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감정서 63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 확인 시 제어패널 조작 등을 통해서 원수 처리량을 상향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은 피고 주장과 같은 가동을 해보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제어 패널의 간단한 조작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은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제어 패널 수정 보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전체 설비의 시간당 생산량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사실조회회신서 6면).

④ 피고는 고액분리기에 동일 농도의 분뇨가 주입되지 않고 묽은 분뇨가 과도하게 주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정인의 현장 확인 시에도 원고가 투입하는 분뇨의 함수율이 설계 기준(무게 비 98%)이나 견적서상 기준(83%)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견적서(갑 제5호증)에 함수율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운전 범위에 함수율에 따른 처리량 검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감정인은 분노의 함수율 측정, 함수율 변경에 따른 처리량 변동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통의 축산 분뇨에 있어서 원수의 함수율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판단 하에 원수 처리량 미달을 하자로 보았다.

⑤ 결국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주장한 원심분리기 급이기 배관(주입기) 파손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감정인이 하자로 판단한 고액분리기의 원수 처리량 미달의 경우도 감정인은 원수 처리량이 미달된다는 현상을 확인하였을 뿐 그 원인은 파악하지 않은 채 설계상, 시공상 하자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추가손해(대체 위탁처리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9. 1. 2. 이 사건 전체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9년 8월 말경까지 악취방지시설, 고액분리시설, 교반발효기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9. 10. 22.경 원고에게 5,643,000원 상당의 응집제(화공약품)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과 납품대금 5,643,000원 합계 35,643,000원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미교부와 관련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에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현금의 지급뿐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하자보증기간을 ‘공사 완료 후부터 2년’으로 정하고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년 8월 말경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하자보증금 납부에 갈음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상계주장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및 교부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갖는

공사대금채권과의 동시이행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상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함철환, 판사 고석범

1) 원심분리기(탈수기)를 가리킨다.